

서울특별시의회  
제278회 임시회

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18. 2. 23.

행정자치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#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

## 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- 의안번호 : 2313
- 제 출 자 : 문영민 의원(찬성의원 9인)
- 제 출 일 : 2017년 12월 18일
- 회 부 일 : 2017년 12월 20일

## 2. 제안이유

-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명칭을 행정안전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,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 변경함(안 제6조)
- 나.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변경함(안 제7조제3항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정부조직법」 등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입법예고 (2017. 12. 26. ~ 2018. 1. 6) 결과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“행정자치부”를 “행정안전부”로, “행정자치부장관”을 “행정안전부장관”으로 변경하는 「정부조직법」이 개정(2017. 7. 20.)됨에 따라 관련 법령 체계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(안 제6조, 안 제7조제3항)하고, 기타 알기 쉬운 용어 정비를 통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11조).
  - ※ 「정부조직법」 개정입법 취지: 국가 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.
- 안 제6조 및 제7조제3항은 조례의 내용을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법령(「정부조직법」)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, 자치단체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동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뒤늦게 「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개정조례안」이 제출(2018. 2. 6)되어 기획경제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바, 본 개정안과 같이 각 조례별 개별적으로 개정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일괄하여 개정되도록 하는 서울시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.
- 안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은 “시의회”를 “서울특별시의회”로 하고, “1회에 한하여”는 “한 번만”으로 정비하여 기관 명칭의 올바른 용어와 좀더 정확한 법령 문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.
- 결론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법령 상호간에는 규범 구조나 규범 내용면에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령체계의 정합성 요청에도 부합하고, 어떤 정책을 법령으로 규정하여 시행할 때에는 그 정책의지 및 입법의도를 정확하게 반영하고, 정확한 정책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법적 효과 등을 가장 쉽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.

전문위원	김태한	입법조사관	김정덕
------	-----	-------	-----